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이다.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경제 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지급률은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이고,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하여 최대 100%에 이르게 된다.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 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를 아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다면, A는 20, B는 40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사적 연금 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 연금 제도인 연금은 저축 제도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 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 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 저축 계좌의 이자 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또한 근로자 에게는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감 해 준다. 하지만 55 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에 해지 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 연금 제도를 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 수당형, 최저 소득 보장형, 최저 보장 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 수당형은 수급 연령 과 거주 요건 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법주형 방식이다.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를 제거할 수 있지만, 취약 계층을 표적화 해 지원할 수 없어 효율성이 낮고 막대한 예산 이 필요하다. 최저 소득 보장형은 연금 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 을 평가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 데 행정 비용 이 들 수 있고, 수급 여부

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최저 보장 연금 형은 **수령** **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 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 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 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기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취약 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 연금 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저** **소득** **보장형**에 가깝지만,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 연금을 **감**하는 점에서 **최저** **보장** **연금형**의 성격도 갖고 있다.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최저**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다**. 또한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 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고, 사적 연금 제도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기초 연금 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